

■ KOTITI 인증마크 BI(Brand Identity)



- ① KOTITI 마크 BI 및 KOTITI 인증마크 작도법은 별표 1과 같다.
- ② KOTITI 의뢰자의 표지판 작도법은 별표 2와 같다.

■ KOTITI 인증마크 사용 및 의뢰자 표시요건

- ① 의뢰자가 KOTITI 마크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제품에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당사는 KOTITI 인증업체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전체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방식의 홍보 등을 포함한다.
- ② 의뢰자는 KOTITI 마크를 인증기관이 추구하는 인증의 목적 외 그 어떠한 수단으로서, 또는 인증범위 내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할 용도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홍보물 등에서 KOTITI 인증마크 표시방법

- ① 의뢰자는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KOTITI 마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KOTIT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의뢰자는 인증 받은 날로부터 인증범위 내에서 KOTITI 마크가 표시된 제품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할 경우에만 인증 받은 공급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인증표시를 하려는 제품이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KOTITI 마크 및 인증을 획득한 업체라는 어떠한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는 동 사항을 암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④ 의뢰자는 인증 받은 인증스킴 형식별로 다음 사항에 따라 표시한다.
  - 스킴형식 1a 또는 1b로 인증을 획득한 의뢰자는 인증대상 제품에 KOTITI에서 교부한 증지(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스킴형식 3으로 인증을 획득한 의뢰자는 인증표시를 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해당 인증제품의 인증번호
    - 2) 인증 받은 스킴형식
    - 3)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모델 또는 형식

< 표시의 예 >

스킴 1b	스킴형식 3
 ○○○○-○○○○○○ (1b)	 KOTITI-○○○○○○○○ (3)
KOTITI 인증마크 BI 하단부에 위와 같이 번호 및 스킴 형식 등 기입	

■ KOTITI 마크 및 표시오용 시의 제재조치

- ① 공급자가 KOTITI 마크 또는 공급자 표시를 함에 있는 이를 오용할 경우 KAS-QP-13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및 KAS-QP-11 “사후관리” 절차서에 따라 경고, 표시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인증을 획득하지 아니한 자,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자(표시정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KOTITI로부터 시정조치에 대한 보완확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KOTITI 마크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형사 고발할 수 있다.